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소방시설법)

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007호, 2020. 2. 18., 타법개정]

소방청 (소방분석제도과) 044-205-7522, 7523, 7524

소방청 (소방산업과) 044-205-7511, 7512

**제21조의2(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,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,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·시행,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4. 12. 30.]